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회사 양도·양수 시 산재보험 승계여부】
(주)A종합석재의 사업부진 및 부도로 인하여 2005. 12. 17일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6년 3월경에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1997. 12. 18일자로 소멸 처리함. B석재산업은 2005. 12. 17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일 장소에서 공장을 임대(주)A종합석재와 임대 계약체결)하여 전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시켜 사업을 수행하던 중 2006. 2. 7일자로 재해가 발생함.

A 동일 장소, 동일 시설물, 동일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사업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인 사업체가 부도로 자진폐업 신고하고 홍OO이 개인 업체인 B석재산업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근로자 또한 2005. 12. 18일자로 새로 입사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양도, 양수 계약을 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승계로 볼 수 없기에 신규 적용 조치하여야 한다.

Q 아파트관리사무소 인계·인수 시 적용에 관한 질의

A 산재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 바, 사업의 양도·양수로 명의가 변경되고 계약서상 양도·양수 전 발생한 산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은 물론 근로자 전원 에 대한 해고 및 임금, 퇴직금 지급도 양도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종이 동일하고 양도인의 시설 설비를 인수받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 및 같은 작업공정에 의하여 같은 생산품을 생산한다면 사업의 승계로 보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임.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에 의거 사업주체의 관리기관이 도래되어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입주 대표회의의 자산 및 모든 관리업무 일체를 기간의 단절 없이 인계·인수 하게 하였다면 보험관계 변경사항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677-752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학원생 수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학원인수계약의 취소 가능성】
저는 M이 운영하는 컴퓨터학원을 3,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학원생 수는 100명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후 알고 보니 컴퓨터 학원생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속셈수강생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생수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그런데 위 사안에서 컴퓨터학원을 양수함에 있어서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인 줄 알고 이를 인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컴퓨터수강생은 5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명은 속셈수강생이었으므로 귀하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

A 민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

면 중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그중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보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0732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려면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고, 계약의 전과정을 볼 때 컴퓨터수강생의 숫자가 위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었으며,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 등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의 모든 사항을 입증한다면 M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금반환청구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전·기·상·식

경기도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Q【계량기 고장시 요금계산】
우리의 계량기가 고장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요?

계량기 고장을 확인한 달과 새 계량기 설치 후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달은 계량기고장 직전월과 같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

A 주택용전력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기타고객이 계량기 고장으로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고장계량기를 교환한 달의 전기요금은 새 계량기를 설치한 후의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동기간의 초사용량을 새 계량기 설치후 사용일수로 나눈 것에 계량기 고장일수(협정대상 일수)를 곱한 것을 1개월분 사용량으로 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Q【계량기 소손·직결송전시 요금계산】
제업으로 공급받고 있는 공장인데 정전이 되어 신고하니 한전직원이 나와 계량기 소손이라 하여 직결송전하고 갔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은 다음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고객과 한전이 사용량을 협정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직전 3개월의 실적치
협정치 = X 협정대상일수
직전 3개월의 실사용일수
 2.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적치
협정치 = X 협정대상일수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일수
 3. 사용실비 및 사용기간에 의하는 방법
협정치 = 사용실비용량(일력kw) X 1일사용시간 X 협정대상일수
 4.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사용실적이 10일간 이상인 경우)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적치
협정치 = X 협정대상일수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사용일수
- 경기도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의·학·상·식

포천병원 소아과 과장 **이종승**



소아천식

기관지 천식이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 곤란, 기침, 천명('쌩쌩', '휘이', '가르릉' 거리는 숨소리)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특히 소아 천식환자에서는 다른 증상 없이 마른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기침형 천식)도 드물지 않다. 전체 소아 천식환자들 중 약 70%는 어렸을 때 자주 감기에 걸리다가 모세 기관지염을 앓은 다음에 천식으로 된다. 기관지 천식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은 알레르기이며, 소아 천식의 약 80%는 알레르기가 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천식 환아의 기관지는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예민하여 자극을 받으면 기관지 근육이 수축되고, 염증으로 기관지 내 점막이 붓고 가래가 많이 생겨서 기관지가 좁아져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원인 알레르겐을 찾아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혈청 특이항체 검사와 알레르기 피부시험 등이 시행되는데 피부시험으로는 의심되는 원인 알레르겐을 확인하며, 면역치료 시 사용하는 알레르겐의 초기 용량을 결정한다.

▲소아 천식-세가지 치료법

첫째는 예방요법이다. 아이의 환경 관리를 해주고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해주거나 피하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회피요법이다. 그리고 천식 예방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방약을 쓸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과가 나타난 후에도 꾸준히(6개월~1년) 써야 한다.

둘째는 면역요법이다. 원인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원인 알레르겐을 환자에게 조금씩 주사하여 면역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면역요법은 규칙적으로 받아야 하며, 치료 도중에 증상이 없어서 만족하면 보호자들도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실망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병이므로 너무 조급히 서둘 필요는 없다. 세번째 치료 방법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물을 치료해 주는 대증요법인데, 약물 치료는 경구제보다 적은 양으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작용이 적은 흡입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포천병원(031-539-9114)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
성매매 극복을 향한 국제십포지에서 다시합계선다 조진경 소장님의 글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처벌법'(주무부처 법무부)과 '보호법'(주무부처 여성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법의 목적은 각각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전, 여성단체와 다양한 관련단체, 정부 기관 등은 성매매를 어

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성매매는 범죄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것은 국민대다수의 정서가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거대한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막고, 당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의 대부분이 인신매매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법 제정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큰 틀로 보아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초기에 만들어진 법률안에 따르면 성을 파는 모든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여 비범죄화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검토과정에서 법적 형평성과 국민 정

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성을 파는 자와 파는 자 모두는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경우만 비범죄화하기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법은 운방범에 비해 거의 모든 점에서 상당한 진전된 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성매매의 당사자를 성을 파는 자와 파는 자, 2인의 관계로 보지 않고, 사실상 성을 파는 자를 '업주'로 본다는 점이다(여성분은 업주에 처벌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성을 파는 자(대부분 남성)와 성을 파는 자(대부분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이나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였지만, 업주에 의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 예방과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법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저희 경리 담당자 말이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면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어디에서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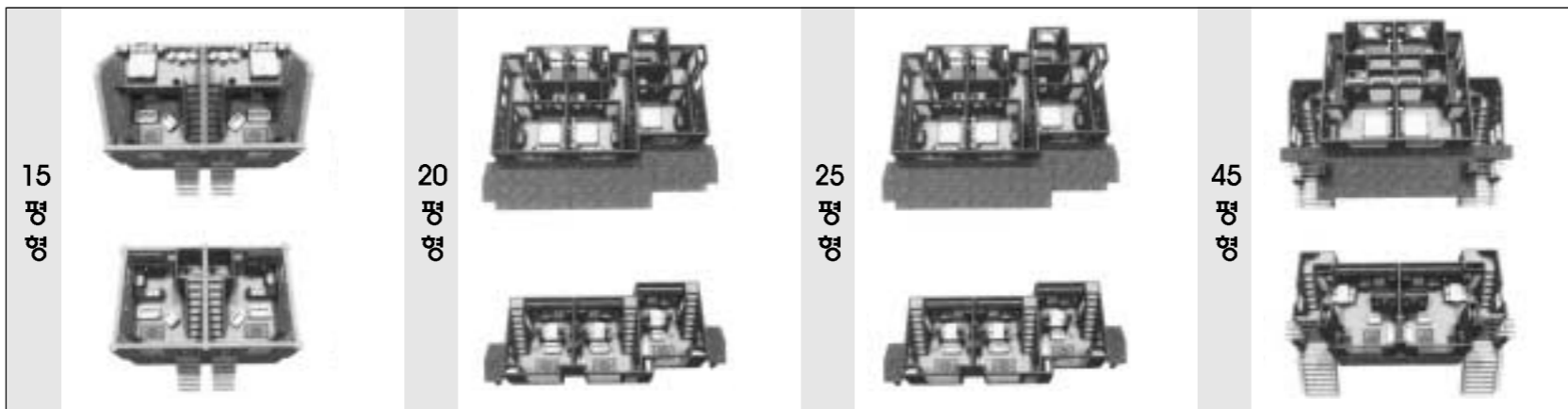
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설명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A 네 그렇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거나, 실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부담하고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 소비주체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세액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경비인 접대비 등의 비용 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유도가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보아 법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672-6116

원목이 주는 편안함과 멋스러움이 가족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까지 배려하는 세심함. 한채 한채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프라임 리조트는 공간배치에서 인테리어 자재 선정, 각종 시스템 설치에 이르기까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과 안전, 품격을 담았습니다.



■분양금액(등기제)				■리조트 시설			
분양평수	서비스면적	총평수	대지지분/평	분양금액(천원)	부대시설	내부시설	
15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20평	52.11평	146,700	•골프연습장	•수영장	•전명형 스투덴산 IKEA 실내가구 제공
20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25평	69.48평	195,600	•바베큐장	•정자	•홈시어터(45평)
25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30평	86.84평	244,500	•산림욕장	•다목적 홀	•가스오븐레인지(45평)
45평형	8평(원목데크제공)	53평	156.32평	440,000	•아외공연장	•카페테리아	•월풀목조
							•월풀냉장고(25평이상)
							•러닝머신(45평)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프라임리조트**